

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 회칙

1994년 11월 25일 제정

1995년 12월 21일 개정

1997년 12월 12일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동북아시아체육운동사학회(North East Asian Society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)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회의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체육운동사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, 체육운동사에 관련된 국제학술단체와의 연락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체육운동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공용어) 본 회의 공용어는 중국어, 한국어, 일본어로 한다.

제 4 조(사무국의 소재) 본 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. 사무국은 본부 사무국과 국가 및 지역의 사무국으로 한다.

제 2 장 사 업

제 5 조(사업) 본 회의는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학회 대회, 연구회의 개최
2. 회보, 학술 잡지의 발간
3. 국제학술단체와의 학술 교류
4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 3 장 회 원

제 6 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한 자로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은 체육운동사 및 관련분야의 교육 연구에 관련 있는 단체·개인으로 한다.
2. 준회원은 체육운동사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한다.
3.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하는 자로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1.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. 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2. 본 회의가 개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.

제 8 조(회원의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다.

1. 본 회의가 정한 회비의 납부

2. 본 회의 회칙과 규정의 준수
3. 기타 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준수

제 9 조(회원의 표창, 제명)

1. 본 회의 발전에 공로한 회원과 관계자,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.
2. 본 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.

제 10 조(탈퇴) 회원은 본 회의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 원

제 11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본 회의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 명
2. 부회장 약간명
3. 감사 2 명
4. 이사 40 명 이내
5. 사무국장(본부 사무국) 1 명
6. 간사(본부 사무국) 2 명
7. 상기의 인원 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12 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총회 종료시부터 차기 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 13 조(임원의 선출)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1.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3. 간사는 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
제 14 조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를 소집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,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감사는 사업, 회계를 감사한다.
4. 이사는 총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회무를 심의집행한다.
5.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, 감사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.
6.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 5 장 회 의

제 15 조(회의의 종류)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, 임시 총회, 이사회 및 회장·부회장 회의로 한다.

제 16 조(총회의 소집)

1. 정기 총회는 학회대회 기간중에 개최한다.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및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

총회를 소집한다.

제 17 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보고를 받는다.

1. 회칙의 개정
2. 사업의 계획과 보고
3. 예산과 결산
4. 입탈퇴, 표창, 제명
5. 임원의 선출
6. 기타

제 18 조(이사회의 기능)

1. 이사회는 당분간 총회의 회무를 대행한다.

제 19 조(회장·부회장 회의의 기능)

1. 이사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조정
2. 기타

제 6 장 회 계

제 20 조(재원)

1.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, 찬조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 단, 당분간 사무국 설치의 국가·지역에서 부담한다.

2. 학회대회 개최에 관한 재원은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·지역에서 부담한다.

제 21 조(연회비) 당분간 정하지 않는것으로 한다.

제 22 조(회계 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의 종료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 23 조(회칙개정) 본 회의 회칙개정에는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.

제 24 조(시행세칙) 본 회의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부 칙

1. 본 회칙은 199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199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회칙은 19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